

캐나다 온타리오신문평의회

I. 신문평의회 설립배경

캐나다 온타리오신문평의회는 1972년 9월 14일, 8개의 온타리오주 일간신문사들이 연합하여 독자적으로 발족한 기구이다. 이어서 그해 8월에 온타리오주 35개 일간신문사 및 53개 지역신문(community newspaper, 마을단위로 발행되는 격일 또는 주간신문들을 말함)들이 가입함으로써 온타리오신문평의회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1972년 시작 당시, 온타리오신문평의회는 신문윤리강령을 공식적으로 문서화하는 데 반하여 각 사례별 평결이 보도의 효율적 지침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그러나 동평의회는 198년 왕립위원회(Royal Commission)에 관한 보고서에서 시민에 대한 언론의 책임조항원칙을 마련하여 문서화하기도 하였다.

II. 평의회 구성

온타리오신문평의회는 이원체제로 되어 있다. 하나는, 불만호소건을 접수, 심의, 평결하며 평의회 재정의 행정업무를 관할하는 집행위원 21명으로 구성된 체제이다. 다른 하나는 평의회를 재정적으로 후원(기부금 납부)하는 온타리오주 내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사 및 지역신문사들의 연합모임 체제이다.

온타리오신문평의회는 기본적으로 회원제로 운영되는데, 현재 온타리오주 내의 42개 일간신문사 가운데 35개사가 동평의회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58개의 지역신문도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다. 평의회 재정은 이 신문사들이 내는 기부금으로 충당되는데, 각 회원사의 신문 발행부수에 따라 회비가 비례적으로 할당된다.

평의회 후원신문사들은 평의회 의장으로부터 평의회 내에 설치된 재정소위원회가 작성한 예산안의 사본을 받아 보게 되며, 예산안에 대해 평의회 정기총회에서나 아니면 사전에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다. 평의회를 후원하는 일간신문사 가운데 60% 이상이 예산안을 거부하게 되면 그 예산안은 새로 세워야 한다. 평의회에 미치는 회원사들의 영향력이 다른 나라 평의회에 비해 더 강하다고 말할 수 있다.

온타리오신문평의회 집행위원 21명은, 의장 1명과 사회각계 대표위원 1명과 언론계 대표위원 10명으로 구성된다. 의장을 포함한 모든 위원은 평의회 정기총회에서 투표자 가운데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임명될 수 있다.

사회각계 대표위원들은 온타리오주를 대표할 수 있는 저명인사(성별 불문)들로 구성된다. 언론계 대표위원들은 현직 언론인들로 구성되는데, 발행인 2명 (1명은 평의회 회원사 중 일간신문사 출신, 나머지 평의회 회원사 중 지역신문사 출신임)과 편집인 7명 (1명만 평의회 회원사 중 지역신문사 출신으로 하고 나머지는 평의회 회원사 중 일간신문사

출신으로 함)과 광고책임자 1 명으로 이루어 진다. 여기서 편집인 7 명은, 편집국장 혹은 편집부국장 2 명, 편집국 내 각부장 2 명과 기자 3 명으로 구성된다.

평의회 집행위원의 임기는 2 년이며, 평의회 의장을 제외하고는 재임이 가능하다. 그러나 연속 4 회 이상 연임은 금지되어 있으며, 중간에 공백기간이 있다가 다시 임용되었을 경우에도 도합 8 년까지만 재임이 가능하다 각 위원들(의장 포함)은 임용 또는 선출된 날로부터 그 직을 수 행하게 된다.

현재 온타리오신문평의회는 평의회 내에 다음과 같이 4 개의 상임 소위원회를 두고 있다.

- o 운영소위원회(Executive Committee)
- o 임명소위원회(Nominating Committee)
- o 재정소위원회(Finance Committee)
- o 심의소위원회(Inquiry Committee)

운영소위원회는 의장 1 명, 사회각계 대표위원 2 명과 언론계 대표위원 2 명 등 도합 5 명으로 구성된다. 동소위원회는 신문평의회를 대표하고, 권한을 대행하며, 평의회가 할당된 의무를 이행하고, 여러가지 행정업무를 처리하면서 온타리오신문평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업무를 하게 된다.

임명소위원회는 평의회 의장 1 명, 사회각계 대표위원 2 명 그리고 언론계 대표위원 2 명 등 도합 5 명으로 구성된다. 동소위원회가 위원추천명단을 작성하게 될 경우에는 평의회를 후원하는 신문사들의 자문을 구해야 한다.

재정소위원회는 사회각계 대표위원 1 명과 언론계 대표위원 1 명으로 구성되며, 1 년에 적어도 3 회 이상 회합을 가져야 한다. 동소위원회는 예산안을 작성하여 평의회 의장을 통해 평의회를 후원하는 각 회원신문사들에게 사본을 통보해야한다. 동소위원회가 작성한 예산안은 회원신문사들의 60% 이상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다시 작성해야 한다.

심의소위원회는 평의회를 대신하여 불만호소건을 심의하게 되며, 좀 더 정확한 조사 및 청문회를 개최하기 위해 필요한 기구이다. 동소위원회는 소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총회에 상정함으로써 평결에 도움을 주게 된다.

온타리오신문평의회는 부의장을 따로 두지는 않지만 위원 중에 1 명을 임시로 부의장에 임명해 두고 있다가 의장의 유고시 의장직을 대행케 하고 있다.

III. 평의회 활동

온타리오신문평의회에 접수되는 불만호소건수를 보면, 설립년도인 1972 년부터 1982 년까지는 연평균 70 건 내외이며 1983 년부터는 100 건을 넘어서고 있다. 이중 심의, 평결까지 도달하는 불만호소건수는 20 건 내외이며 심의전 사전조정되는 건수도 20 건 내외이다. 나머지 불만호소건은 취하되거나 중단되고 있다.

온타리오신문평의회는 신문의 올바른 보도를 위해 다음과 같은 몇가지 기준을 설정해 놓고서 활동하고 있다.

1. 뉴스보도면

- (1) 뉴스를 선별, 편집, 요약하는 데 있어 논리적 취향 및 감각을 적용한다.
- (2) 정확하게 보도해야 한다.
- (3) 독자에게 뉴스의 전체운곽을 알려야 한다
- (4) 뉴스 취재 및 보도에 있어 공정성을 지켜야 하며, 절대로 광고주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
- (5) 보도는 감정, 편견이 개입되지 않은 분명한 사실, 건전한 이성에 기준해야 한다.
- (6) 각계, 각층의 다양한 관심 및 이익을 반영토록 노력해야 한다.

2. 의견기사 게재면

- (1) 사설에서는 신문사 고유의 의견 및 입장을, 의견란에서는 그밖의 의견을 활성화하여 보도해야 한다
- (2) 공정한 의견게재가 되도록 노력한다.

3. 사회봉사기능면

- (1) 국민들이 사회면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현대생활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적절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공기로서 존재해야 한다.
- (2) 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내의 모든 기구 및 정부 등에 대한 감시기능을 지녀야 한다.
- (3) 신문의 보도가 바로 사회의 내일을 형성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4. 오락제공면

- (1) 사회 각계각층의 독자에게 정보와 마찬가지로 오락을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2) 국민들이 여가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공공오락시설을 알려준다.
- (3) 지역사회에 이익에 도움이 되는 오락을 취재하여 보도한다.

온타리오신문평의회는 심의 및 일반업무처리를 위해 집행위원들의 총회인 정기위원총회를 1년에 적어도 3회 이상 개최하고 있다. 불만호소건 심의를 위해서나 기타 필요한 일이 발생할 경우, 평의회 의장의 발의에 의해서나 혹은 집행위원 5명 이상의 공동발의에 의해서 임시회의도 개최하고 있다. 그리고 온타리오신문평의회를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회원신문사들도 모두 참여하는 평의회정기총회(Annual Corporation Meeting)도 연 1회 개최하고 있다. 이 총회에서는, 신문평의회 활동상황보고, 재정상황보고와 예산심의 및 감사보고, 신문평의회 정관개정 문제가 다루어지며, 새 위원을 선출해야 할 경우에는 투표에 의해서 신임위원을 선출하게 된다. 투표에서는 각 위원이 1인 1투표권만을 갖게 된다.

온타리오신문평의회는 1년에 한번씩 정기연차보고서를 간행하고 있다.

IV. 불만호소절차 및 규정

온타리오신문평의회는 크게 두 종류의 불만호소건을 심의, 처리한다. 첫째는, 뉴스를 취재하고 보도하는 데 있어 언론의 행위에 대한 일반시민의 불만호소를 다룬다. 여기에는 신문의 논평이나 광고도 포함될 수 있다. 둘째는, 언론과 관계하는 개인과 단체들의 행위에 대한 언론인들의 불만호소를 다룬다.

그러나 3 종류의 신문기사에 대해선 불만호소를 받지 않고 있다. 즉, 의견기사, 편집자에 보내는 독자투고 그리고 특정인, 특정단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일반인, 일반단체를 대상으로 한 기사들에 대해선 불만호소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다. 여기서 의견기사라 함은 사실, 논평 및 해설기사 등을 의미한다.

온타리오신문평의회는 불만호소를 서면으로만 접수하고 있다. 그래서 불만호소인은 서면으로 불만호소사유를 밝혀야 하며, 동시에 문제된 기사의 스크랩과 해당신문사와 교환한 서신들의 원본이나 사본들도 제출해야 한다. 불만호소인이 해당신문사와 접촉한 사실이 없을 경우 바로 심의에 들어가지 못하며, 이럴 경우 평의회는 해당신문사와 연락을 취해 불만호소인이 직접 해당신문사로부터 피해를 회복받고 화해할 수 있도록 돕게 된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조정이 안될 경우 평의회가 그 사건을 다시 이첩받아 심의에 들어가게 된다.

불만호소절차규정

본 온타리오신문평의회 정관의 제 9 조 가항 (8)호에 근거해 불만호소처리절차에 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마련한다.

1. 본 평의회에 접수되는 모든 불만호소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본 평의회와 심의소위원회는 불만호소처리를 위해 청문회를 열고 증언을 청취할 수 있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대리인이나 변호사의 대리 참석 혹은 동반참석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3. 본 평의회는 법원이 아니라 윤리기구이므로, 소송이 시작되었거나 소송의 위협을 받고 있거나 소송유발가능성이 있는 불만호소건은 일반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4. 불만호소건 접수 여부에 대한 본 평의회는 분별은 절대적이다. 그러나 접수여부에 대한 심사는 다음 원칙들을 참작해야 한다.
 - (1) 문제가 된 기사가 공표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후 접수된 불만호소건은 각하시킬 수도 있다.
 - (2) 본 평의회 후원신문사에 대한 불만호소는 일단, 동신문사가 불만호소인이 만족할 만큼 불만호소를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는 한 접수하지 않도록 한다.
 - (3) 본 평의회 후원신문사에 해당되지 않는 신문사를 상대로 한 불만호소건은 해당신문사가 동의할 경우에만 심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4) 온타리오주 노동관계 법(the Ontario Labor Relations Act)과 노사단체교섭협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신문사의 내적 불만사항 관련된 불만호소건은 접수하지 않는다.
 - (5) 일반적으로, 이미 평결이 내려진 불만호소건과 동일한 불만호소건은 심의하지 않는다.

(6) 본 평의회는 특정상황 하에서 어떤 불만호소건에 있어 법률소송제기 포기각서에 서명하도록 불만호소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5. 본 평의회는 신문사 자체를 상대로 한 불만호소건은 접수하되, 신문사 내의 편집책임자를 상대로 한 불만호소건은 접수하지 않는다. 또한 평결문을 발표할 때에도 신문사 관계자의 성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6. 본 평의회 집행위원들 가운데 언론계 대표위원들은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신문사를 상대로 한 불만호소건을 심의하는 회의에 참석해서는 안된다. 그 회의가 심의소위원회 회의든, 위원총회이든 참석하지 않아야 한다.

V. 심의절차

온타리오신문평의회는 불만호소건을 심의하기 위해 적어도 1년에 3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심의회의 의장을 포함하여 집행위원 21명 전원으로 구성되며, 심의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되나 공개청문회가 바람직하다고 다수결로 표결할 때에는 일반시민과 기자들에게 공개될 수 있다.

온타리오신문평의회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모든 불만호소인에게 소송포기각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명예훼손으로 법률소송제기가 가능한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포기각서를 요구한다. 왜냐하면 온타리오신문평의회도 법원에 대한 대안(alternative)이기 때문이다.

동평의회는 불만호소사실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확인을 위해 의장을 포함하여 위원 5명으로 구성된 심의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동소위원회는 불만호소인과 해당신문사를 모두 소환하여 설정된 마감일까지 최종적인 증거문서의 개요를 제출하게 하고, 비공개청문회에 참가하여 안건을 토의하도록 하는 2단계 절차를 밟게 된다.

청문회에서는 반대신문이나 녹음을 할 수 없고, 대리인이나 변호사의 출석도 허용하지 않는다. 청문회과정에서 불만호소인이 먼저 발언해야 하며, 신문사측이 나중에 발언하게 된다. 당사자간에 반박의 기회가 주어지며, 질문을 할 경우 의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심의가 끝난 뒤에, 심의소위원회는 소견서(recommendation)를 작성하여 평의회(집행위원총회)에 상정함으로써 평결문 작성에 도움을 주게 된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내의 대부분 신문사가 온타리오신문평의회를 후원하는 회원이기 때문에 평의회 평결문은 쉽게 보도되며, 시민들에게 알려지게 되어 그만큼 구속력을 갖게 된다.

VI. 신문평의회 정관

제 1 장

제 1 조 전 문

본 온타리오신문평의회(the Ontario Press Council)는, 언론이 민주사회에서 유통되는 정보의 질적 수준과 합법적이고도 근본적인 이익관계에 놓여 있다는 기본인식으로부터 그

존립가치를 찾는다. 이러한 의의로부터 일반독자들은, 사전동의없는 사생활침해와 같은 온타리오주 내의 신문사들의 불공정보도행위에 대해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받게 된다. 독자들은 또한, 풍자나 풍문에 의해 비난을 받았을 경우, 보도가 일반적 윤리강령을 위반했을 경우, 추측을 사실인양 보도했을 경우, 사실을 왜곡해서 보도했을 경우와 정정보도를 거부 할 경우에도 그의 시정을 요구할 권리를 갖게 된다. 본 온타리오신문평의회는 또한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정부정보에 대한 접근권문제에 있어서도 시민의 권익을 대변한다. 본 평의회는, 평의회를 설립한 회원언론사들로부터 독립해서 활동하지만 언론의 독립성과 완전한 공적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고 있다. 그리고 본 평의회가 내린 결정은 온타리오주 사회의 광범위한 단면의 합의(Consensus)를 의미하며, 현역 언론인들의 합의가 나타난 것이기도 하다.

제 2 조 목 표

본 온타리오신문평의회가 지향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1. 언론과 시민 양자를 위해 언론의 자유를 보전한다.
2. 시민과 언론 사이에서 이해의 장을 여는 매개체로서 봉사한다
3. 언론이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직업인으로서의 언론인의 사명을 다하도록 독려한다.
4. 신문보도에 있어 일반뉴스 및 논평과 광고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호소를 접수처리한다. 또한 일반시민과 단체로부터 언론에 가해지는 압력 및 행동에 대한 언론사들의 불만호소도 접수처리한다. 그리고 본 평의회가 내린 평결은 공개적으로 발표한다.
5. 공익에 관련된 정보취재를 방해하는 일련의 조치들을 감시하고 보고한다
6. 본 평의회 목적과 관련된 문제에 관해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에 진정한다.
7. 본 평의회 활동에 대한 정기보고서를 발간한다.

제 3 조 정 의

본 신문평의회 정관과 기타자료에서의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생략)

제 4 조 위 원

본 평의회를 구성하는 위원들은 다음과 같이 두 계층으로 분류된다.

o 일반위원

o 후원회원 (신문사)

1. 일반위원

(1) 어떠한 자연인도 평의회 정기회의에서 적어도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평의회 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2. (1) 후원회(신문사)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발행되는 신문사가 본 평의회를 후원하는 회원이 되고자 할 경우 본 평의회 의장에게 회원가입통지서를 송부하면 된다. 신문사의 회원자격 취득은 서면통지서가 평의회 의장에게 도착한 날로부터 유효하게 된다.

(2) 본 평의회의 회원신문사가 회원직을 사퇴하고자 할 경우 사퇴서를 평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문사가 사퇴하게 되면 자격상실은 사퇴서가 평의회 의장에게 도착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게 된다.

(3) 본 평의회의 회원신문사들은 다음 의무사항들을 준수해야 한다

① 매 회기년도 11월 15일에 평의회 의장이 예산안을 회원신문사들에게 송부하면 그 예산안을 심의, 검토해야 한다.

② 본 평의회의 각 회원신문사들은, 최근 6개월간의 총 발행부수 가운데 자신의 신문사 발행부수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평의회에 내는 기부금액수를 산정하게 되며, 그 기부금에 따라 평의회 운영을 담당케 된다.

③ 본 평의회의 평결내용을 지면에 게재해야 하며, 평의회의 기타 보고사항도 마찬가지이다.

④ 본 평의회의 어떤 회원신문사도 평의회의 연차총회 및 다른 회의에 참석은 할 수 있어도 투표권을 갖지는 못한다.

제 5 조 집행위원(Directors)

1. 본 평의회의 업무는 집행위원들에 의해 이뤄지며, 집행위원들만이 본 평의회의 정위원으로 간주된다.

2. 본 평의회는 총 21명의 정위원을 보유하게 되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의장 1명

(2) 사회각계 대표 10명-현재 언론계에 종사하고 있지 않으면서 온타리오주를 광범위하게 대표할 수 있는 인사이어야 하며, 지역적으로 균등하게 선임되어야 한다.

(3) 언론계 대표 10명-본 평의회 회원신문사들에 종사하는 언론인이어야 하며, 언론계를 대표할 수 있는 인사이어야 한다.

3. 평의회의 모든 새 위원들은, 위원선출안 발의 후 30일 이내에 개최되는 평의회 회의에서 적어도 재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만 임명될 수 있다.

4. 의장을 포함한 평의회 각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다. 그러나 위원들의 도중사퇴등 결원 보충을 위한 임명은 교체제한규정(임기 첫해는 10명, 두번째 해는 명으로 제한됨)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다.

5. 본 평의회의 모든 위원은 3회 연속 재임하거나 도합 8년 동안 재임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재임은 허락되지 않는다.

6. 본 평의회의 모든 위원은 임명이 발효되는 날로부터 평의회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

7. 임기중 보궐되는 위원은 전임위원이 임명된 방식대로 임명된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6 조 소위원회

1. 본 평의회는 다음과 같은 상임소위원회를 보유할 수 있다.

(1) 운영소위원회 (Executive Committee) - 실질권한을 행사하며 평의회를 대표한다.

(2) 심의소위원회(Inquiry Committee) - 불만호소건을 심의하며, 심의보고서를 위원총회에 상정하면서 사안에 대한 평결내용 및 방향에 관해 제안을 한다.

(3) 재정소위원회 (Finance Committee) - 매년 예산을 세우며, 예산에 관련된 매월 보고서를 작성하며, 연봉 및 수당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또한 평의회 내의 기타 재정상태를 항상 주시하며, 재정문제에 관해 평의회가 취해야 할 조치들을 제안한다.

(4) 임명소위원회 (Nominating Committee) - 매 회기년도의 마지막 위원총회에서 다음사항들을 제시하며 숙고한다.

① 선출하고자 하는 신임위원 명단

② 상임소위원회에 배석시킬 위원 명단과 신임부의장 추천명단

2. 본 평의회는 필요할 경우 특별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특별소위원회는 사회각계 대표위원 3인과 언론계 대표위원 2인으로 구성되며, 다음 임무들을 수행하게 된다.

(1) 평의회 의장의 임명 및 재임명안을 발의하며, 피지명자와 함께 연봉과 재임기간에 대해서도 협상한다.

(2) 평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평의회 사무국장 후보를 추천해야 하며, 사무국장 피지명자와 함께 그의 임기에 대해서도 협상한다.

3. 본 평의회는 필요할 경우 임시소위원회(ad hoc committees)를 설치할 수 있다.

4. 본 평의회는 본 정관 제 6 조 제 1 항에서 언급된 소위원회들 가운데 경우에 따라서 집행위원회를 제외한 1 개 내지 그 이상의 소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서, 대신 그 기능을 운영소위원회로 하여금 대행케 할 수 있다.

제 7 조 재 정

1. 본 평의회는 의장 및 위원들에게 정기회의나 임시회의를 막론하고 회의참석에 따른 수당을 재정소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또한 평의회외의 다른 업무로 인을 활동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2. 본 평의회외의 활동비는 다음 사항들을 포함한다.

(1) 평의회 의장에게 지급되는 연봉

(2) 평의회외의 제반회의 및 정기총회와 소위원회외의 회의, 그리고 평의회를 대표해서 행해지는 활동에 대해서 사회각계 대표위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3) 평의회 ·사무총장 및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봉급

3. 평의회외의 회기년도는 매년 12 월 31 일에 종료된다.

제 8 조 식 장

1. 본 평의회 의장은 평의회 제반회의 및 정기총회의 의장직을 수행해야 하며, 임명소위원회에서도 의장직을 맡아야 한다.

2. 본 평의회 의장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한 공식행사에서 온타리오신문평의회를 대표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 의장은 공적 장소에서 연설을 하게 될 수도 있으며, 평의회외에 관해 기자회견을 하게 될 수도 있다. 또한 평의회외의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하며, 평의회외의 홍보문제에도 주력해 야 한다.

3. 의장은 또한 종종 평의회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는 특별임무도 수행해야 한다.

제 9 조 부 의 장

의장의 부재시 혹은 기타 사유로 인해 의장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키 어려울 경우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해야 한다.

제 10 조 사무총장

1. 본 평의회의 사무총장은 평의회의 실질적 행정책임자로서 직무를 수행케 되며, 종종 평의회로부터 주어지는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사무총장은 재정책임자로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재정소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해야 한다. 또한 사무총장은 재정상황기록이 정확히 유지되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재정소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연차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3. 사무총장은 가능한 한 내·외부인사와 면담이 쉽게 가능하도록 시간적 여유를 갖고 직무에 임해야 한다. 또한 온타리오신문평의회를 홍보하고 이해시키는 데 주력해야 하며, 온타리오주의 시민과 언론의 이익을 공동으로 대변해야 한다.

제 11 조 회의 및 절차

가. 위원회의

- (1) 본 평의회의 정위원인 집행위원 21 명은 적어도 1 년에 3 회 이상 의장이 지정한 날짜에 정기위원총회를 가져야 한다. 정기위원총회 개최에 대한 통지는 의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방식에 따라 적어도 개최 30 일전에 각 위원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한편, 평의회 연차총회와 정기위원총회가 동일한 일자에 개최될 수도 있다.
- (2) 임시회의는 본 평의회의장의 발의에 의해 개최되거나 집행위원 5 명의 공동발의에 의해 개최될 수 있다. 이때 개최통보는 10 일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 (3) 집행위원들의 회의에서 정족수는 재석위원 13 명(의장 포함)이다.
- (4) 위원들의 회의는 불만호소건을 심의하거나 기타 기밀사안을 처리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뉴스보도를 위해 기자들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회의공간이 허락하는 한 일반시민에게도 공개되어야 한다. 평의회 위원총회 및 심의소위원회는 피해를 입은 불만호소인측이 서면으로 동의할 경우 관계자 증언을 듣기 위한 공개청문회 개최를 과반수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
- (5) 의장을 포함한 각 위원들은 1 인 1 투표권만을 갖게 된다.
- (6) 본 정관은, 사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에서 투표자 가운데 3 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투표자의 3 분의 2 라는 수가 전체위원의 단순과반수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평의회는 과반수 이상 투표에 의해 다른 사안들을 결정할 수 있다.
- (7) 평의회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의회의 제반회의에서 의장직을 맡아야 한다. 평의회 부의장은 의장의 부재시 의장직을 대행할 수 있다.
- (8) 본 평의회는 또한 본정관에 명시된 온타리오신문평의회의 목표 외에 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목표나 절차들을 신설하거나 수정하고, 규정하고, 조정할 수 있다. 또한 평의회는 불만호소건을 기각할 경우에도 신중한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정관조항을 개정할 경우는 정기위원총회에서 투표자 가운데 3 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나. 평의회 회의

- (1) 본 평의회는, 21 명의 집행위원들과 평의회를 후원하는 신문사들의 대표들이 참석하는 평의회총회를 연례적으로 개최해야 하며, 개최일자와 장소는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
- (2) 평의회총회 개최에 대한 통보는 의장이 편리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에 따라 적어도 개최 10 일 전에 전체위원 및 후원신문사 대표들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통보방식은 개별통보이어야 한다.
- (3) 평의회 연차총회에서는 처리될 일반사안과 함께 평의회 전반 업무보고와 재정상태보고 그리고 예산 및 결산보고가 동시에 다루어져야 한다. 또한 다음 회기년도를 위한 감사선출이 있어야 하며, 감사에 대한 수당은 고정되어야 한다. 전년도 평의회 연차총회 이후 평의회 정관조문 변경에 대한 발의가 있었을 경우에도 과반수 투표로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임기만료회기년도에 개최되는 평의회 연차총회에서는 신임위원 선출도 행해질 수 있다.
- (4) 평의회 연차총회에서의 정족수는 위원 13 명이다.
- (5) 평의회 연차총회에서 투표권을 가진 위원들은 1 인 1 투표권만을 가진다. 단, 투표 후 찬반 동수일 경우, 평의회 의장이 2 차투표 실시를 명할 수 있다.
- (6) 평의회 연차총회에서 처리되는 사안들은 투표자 가운데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될 수 있으며, 신임위원 선출은 본 정관 제 3 조 3 항에 명시된 대로 투표자 가운데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인준될 수 있다.
- (7) 본 정관의 평의회 연차총회 관계조문들은 적용권한이 배제되지 않는 한 평의회 전체위원들이 모이는 임시회의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단 평의회 전체 위원들이 모이는 임시회의 개최에 대한 통보는 적어도 21 일 전에 이뤄져야 한다.

제 12 조 정관개정

1. 본 평의회는 정관은 집행위원 21 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의 투표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정관개정을 위한 회의는 안건발의 후 적어도 30 일 이전에 개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규정은 본 평의회 후원일간신문사들의 승인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2. 집행위원들이 정관개정을 결의한 후 40 일 이전에, 본 평의회 후원 일간신문사들의 60% 이상(즉, 평의회를 후원하는 일간 및 지역신문사 전체의 비례투표수(weightedvotes)의 3분의 1 이상을 의미함)이 의장에게 반대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는 한 정관개정은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정관개정에 대한 반대표시는 서면 통지서가 평의회 의장에게 도착한 날로부터 유효하게 된다.

제 2 장 상임위원회

제 1 조 임명소위원회(Nominating Committee)

1. 본 평의회는 임명소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동위원회는 2 년 임기 중 중반에 접어들 집행위원들 가운데 사회각계 대표위원 2 명, 언론계 대표위원 2 명과 평의회 의장 1 명등 도합 5 명으로 구성된다.

2. 본 온타리오신문평의회 운영의 효율성은 전적으로 집행위원들의 역량에 달려있기 때문에, 임명소위원회는 위원추천명단을 작성할 때 다음 일반규칙들을 준수함으로써 가장 바람직스럽고 적절한 선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사회 각계 대표 집행위원들은 대체적으로 온타리오주 사회를 대표하는 인사(성별불문)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사회 각계로부터 고루 선출되어야 한다.

(2) 언론계대표 집행위원들은 다음 항목들의 기준에 따라 10 명이 선출되어야 한다.

① 발행인 2명-1명은 본 평의회의 후원 일간신문사(contributing daily newspaper)출신으로, 다른 1명은 후원 지역신문사(contributing community newspaper) 출신으로 구성된다.

② 편집인 7명 (그 중 1명은 후원 지역신문사 출신이어야 함)-2명은 편집국장 혹은 편집부 국장이어야 하며, 또 2명은 편집국 내의 각 부장 중에서 선임되어야 한다 나머지 3명은 기자이어야 한다.

③ 광고책임자 1명

3. 임명소위원회의 위원후보 인선작업은 평의회의 후원신문사들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4. 임명소위원회는 위원후보들을 추천하는데 있어 각 위원들을 적어도 운영소위원회에 2년, 심의소위원회에 적어도 2년 동안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제 2 조 운영소위원회(Executive Committee)

1. 본 평의회는 운영소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동위원회는 사회각계대표 집행위원 2명, 언론계대표 집행위원 2명과 평의회 의장등 도합 5명으로 구성된다. 단, 직권에 의한다면(ex officio) 평의회 부의장과 심의소위원회의 의장도 포함될 수 있다. 또한 동위원회의 회합은 정기위원총회 중간에 적어도 일년에 3회 이상 개최되어야 한다

2. 운영소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평의회로부터 부여받은 권위를 행사하며 임무를 수행한다.

(2) 정기위원총회 중간중간에 제기되어지는 사안들과 주제들을 총회에 상정해야 한다

(3) 본 평의회의 지시나 동의에 따라 평의회를 대신할 수 있다.

제 3 조 재정소위원회(Finance Committee)

1. 본 평의회는 재정소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동위원회는 사회각계대표 집행위원 1명과 언론계대표 집행위원 1명으로 구성 된다. 동위원회의 회의는 1년에 적어도 3회 이상 정기위원총회 전에 개최되어야 한다.

2. 재정소위원회가 세운 예산은 인준을 받기 위해 평의회 후원신문사들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본 평의회의 의장은 재정소위원회가 세운 예산안의 사본들을 일반우편이나 그밖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식에 따라 본 평의회의 후원신문사들에게 배포해야 한다.

3. 예산안은 본 평의회를 후원하는 일간신문사들 가운데 60% 이상 [즉, 평의회를 후원하는 일간 및 지역신문사 전체의 비례투표수의 3분의 1 이상을 의미함]이 의장으로부터 예산안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장에게 반대(거부)의사를 서면으로 표명하지 않는 한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한 반대의사표시에 대한 통보는 의장이 접수한 날로부터 유효하게 된다.

제 4 조 심의소위원회(Inquiry Committee)

1. 심의소위원회는 일반시민으로부터의 불만호소를 평의회를 대신하여 심의 처리한다.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마다 구두증언 및 증거서류를 확보할 수 있으며, 평의회가 내려야 할 평결내용을 평의회에 제안할 수 있다. 집행위원총회는 심의소위원회의 제안을 채택하거나 거부하거나 혹은 수정채택할 수 있다.
2. 시민에 대한 언론의 불만호소는 모두 집행위원총회에서 심의, 처리된다. 심의소위원회는 언론에 대한 시민의 불만호소만을 심의, 처리하며 사건이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가 개입될 경우에는 그 사건을 집행위원총회로 이첩시킬 수 있다.

제 5 조 정관개정

본 정관 제 2 장에 대한 개정은 정기위원총회에서 전체집행위원의 단순과분수투표(simple majority)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위원회소식

대구지방토론회 개최 - 「매체환경변화와 언론윤리」란 주제로-

당위원회는 지난 3월 28일 대구 금호호텔에서 「매체환경변화와 언론윤리」라는 주제로 '88년도 첫번째 지방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모임에는 대구지방의 법조계·학계·관계 및 사회단체 등 60여명의 인사들이 참석해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을 가졌다.

주제발표자인 서정우 교수는, 언론의 자율화 제고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매제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견되는데, 이것은 언론보도에 의한 권익침해의 개연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교수는 이와같은 매체환경의 변화는 언론의 법·윤리적 책임의식이 전보다 강조되며,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된다고 말했다.

신간안내

『현대미디어이론』

원우현 저(고려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저자가 현대정보사재에 있어 뉴미디어의 영역과 학문적 연구경향을 새로운 각도에서 체계화한 역저이다.

현대사회는 정보사회이며 현대인에게 정보와 뉴미디어에 대한 인식은 필수적 요건이 되고 있다. 이런 뉴미디어에 대한 이론적 체계를 현시해 주고 있는 본 저서는 학자, 언론인 및 정보산업 종사자들에게 실질적 안내자 역할을 해주며, 뉴미디어의 발달과 함께 변화하고 있는 현사회의 위상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본 저서는 뉴미디어의 연구방법과 영역, 역사적 맥락에서 본 정보사회, 뉴미디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구성돼 있다. (나남간·7천 5백원)

『언론인의 직업윤리』

한국언론연구원 편

한국언론연구원이 펴낸 총서 중 네번째로 발간된 책이다.

본서는 2 편의 논문과 3 편의 자료로 구성돼 있다. 논문편에서는 각국 신문윤리 기구들의 현황 및 운영실태를 총론적으로 서술해주고 있으며, 언론인으로서 기자가 가져야 할 윤리적 기준과 책임의식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항들을 설명해 주고 있다. 한편 자료편에선 세계 유명언론사 19 개사의 직업윤리강령 및 편집 강령들이 망라되어 있으며, 각국 신문윤리기구의 헌장 및 강령과 영국 및 미국 신문평의회에 제소된 사례 100 건을 차례로 소개하고 있다.

언론법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언론인들에게 귀한 자료가 되고 있다.

(한국언론연구원간·7 천원)